

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대응매뉴얼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tents

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대응매뉴얼

이 매뉴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김앤장 법률사무소 수행)의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발간사	1
I. 방송 포맷의 유형	3
II.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4
III. 저작권 외의 구제방안	9
IV. 포맷인증보호협회(FRAPA)	11
V.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대응방안	15
붙임 : 중국의 법적 대응 절차 개요	26

발간사

독창적인 기획력과 높은 완성도를 보유한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은 전세계 각 국가에서 한류의 불을 일으키며 뻔 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이제 국제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송콘텐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제작진들이 공들여 창작한 방송 포맷을 표절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송 포맷 표절은 제작진의 창작 의욕을 크게 꺾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 등의 정당한 포맷 판매 기회를 박탈하는 피해를 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방송 포맷의 경제적 가치를 훼손하여 방송 콘텐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무분별한 표절 상황을 직시하여, 국내 창작 방송 포맷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한류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분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기초로 대응매뉴얼 형태의 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본 대응매뉴얼은 현재 방송 포맷 표절 피해의 대부분이 외국 사업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저작권법 등 방송 포맷의 권리자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이론적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 포맷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전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본 대응매뉴얼이 국내 방송 제작 관계자 분들께 방송 프로그램 포맷 표절 대응과 관련한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I

방송 포맷의 유형

- 방송포맷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본 매뉴얼에서는 방송포맷을 하나의 형태로 특정짓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 ① 1유형 :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나타나는 1유형 방송 포맷은 포맷 개발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컨셉’, ‘기획’ 등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로 확정한 상태를 가리킨다.
- ② 2유형 : 프로그램 제작 단계인 2유형 방송 포맷은 구체적인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 요소들을 주로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대본, 캐릭터, 이야기 구조 등 다른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구조 내지 스타일 등을 가리킨다.
- ③ 3유형 : 프로그램 제작 완료 이후 단계인 3유형 방송 포맷은 제작 및 섭외 계획, 예산, 편성 스케줄, 제작 시 주의사항 등 방송 외적인 측면의 노하우들을 의미한다.

〈 방송포맷의 유형 〉

유형	내용	발생 또는 거래 시기
1유형	• 새로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기본 컨셉	초기 기획 단계
2유형	• 대본, 캐릭터, 이야기 구조, 프로그램 외관, 스타일, 비주얼 그래픽, 음향 효과, 조명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제작 단계
3유형	• 프로그램 외적 요소들(제작 및 섭외 계획, 예산, 편성 스케줄 등) • 컨설팅, 상담 서비스	제작 완료 이후

II

방송 포맷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1. 저작물 인정 여부

-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일반적으로 표현의 내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 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져서 타인의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 앞서 살핀 유형별로 저작물 인정 가능성은 살펴보면, 1유형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유형의 경우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유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따라서 방송포맷의 경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작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배열 및 구성이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편집저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 또한 편집저작물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그러나 이와 같은 편집저작물 이론은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방송 포맷을 편집저작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선례가 없고, 판단 기준에 대한 학설도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국제 분쟁에서 이를 주장 및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2. 저작권 침해 여부

- 저작물로서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 방송 포맷의 제작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가 방송 포맷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여도, 그와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을 때 언제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저작물로 인정받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 포맷의 표절은 주로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문제되나, 본 대응매뉴얼에서는 저작권 침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복제권 침해를 기준으로 그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복제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서 두 저작물이 유사해야 한다는 ‘실질적 유사성’뿐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서 침해자가 침해 대상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의거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의거성

- 먼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이 창작자들 사이의 우연한 발상의 일치에

서 귀결된 것이 아니라, 침해 여부가 문제된 표현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창작된 것이어야 한다. 두 개의 작품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침해 행위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접한 후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작자가 의도적으로 타 저작물의 특징을 모방한 것인지라는 개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이러한 면에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고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으로 불린다.
- 방송 포맷 표절의 경우, 이미 방송을 통해 공개된 프로그램을 표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많은 경우 법원이 의거성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이러한 의거성이 문제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② 실질적 유사성

- 원저작물과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 사이에 상당한 정도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두 개의 작품이 유사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요건

으로 불린다. 그러나 두 개의 작품이 어느 정도로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우며, 판례나 학설도 분명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 그런데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권리자가 방송 포맷의 가지 유형 중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의미하는 ‘2유형’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경우, 법원이 이러한 요소들을 저작물로는 인정하면서도 표절 작품이 각각의 요소들을 조금씩 변경함을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한 사례가 많다.
- 따라서 편집저작물과 같이, 방송포맷 전체를 하나의 저작물로 전제하여 전체 대 전체를 비교하는 이론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이론에 대한 학설이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III

저작권 외의 구제방안

1.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포괄적 규정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그 유형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자로서는 방송 포맷이 표절된 경우, 해당 방송 포맷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 이러한 표절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점, 이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함으로써 침해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2014년 도입되어 아직 많은 선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상적인 요건들로 인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다툼이 많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표절행위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은 피해자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등 민사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와 같이 형사범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그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

2.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따라서 방송 포맷이 이와 같은 영업비밀로 유지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이러한 방송 포맷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 따라서 방송 포맷 표절 사례에서 이러한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 포맷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에 관한 기획안이나 컨셉 등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것에 대한 서약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방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된 방송을 보고 포맷을 표절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IV

포맷인증보호협회(FRAPA)

- FRAPA는 2000년에 설립된 방송 포맷의 표절 방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강화,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포맷인증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이다.
- 방송 제작과 관련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FRAPA는 저명한 방송 포맷 제작자와 유통업자,

방송인 등을 주요 구성원들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방송 포맷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는데, FRAPA는 방송 포맷과 관련한 세계 동향을 조사하여 매년 FRAPA Legal Report 발표는 물론, 이 외에도 방송 포맷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주요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① 방송 포맷 등록 (Format Registry)

- 실제 방송 포맷 표절 분쟁 사례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별다른 자료가 없어 입증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해당 방송 포맷이 문서화되었는지 여부가 분쟁에서 쟁점이 되기도 하는바, FRAPA는 회원사들에게 방송 포맷의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FRAPA에 방송 포맷으로 등록되었음이 해당 방송 포맷이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방송 포맷 개발자로서는 자신의 방송 포맷이 개발된 시점 및 방송 포맷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② 방송 포맷 분석 (Analysis Services)

- FRAPA는 방송 포맷 표절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방송이 타 방송을 복제(copy)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FRAPA는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장면 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두 방송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및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최종적인 유사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 FRAPA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FRAPA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FRAPA가 세계적인 방송 포맷 보호 단체로서 가지는 지위를 고려할 때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FRAPA의 의견은 각 국의 법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FRAPA가 두 방송의 개별적인 장면들에 대해 유사성을 분석한 보고서는 방송 포맷 제작자로 하여금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분쟁 중재 (WIPO Dispute Resolution)

- FRAPA는 방송 포맷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와의 협력 하에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FRAPA에 따르면 FRAPA의 중재 서비스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고 한다.
- 이와 같은 분쟁 중재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다만, 분쟁의 상대방이 중재 절차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참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V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대응방안

1. 사전적 대응 방안

- 실제 표절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표절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차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물의 권리와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두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를 보호받기에 용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분쟁 발생 전에 미리 사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전적 대응방안의 개요〉

대응방안	
1	중요 요소들은 문서화한다.
2	FRAPA(포맷인증보호협회)에 자신의 방송 포맷을 등록해둔다.
3	독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3자의 표절을 어렵게 만든다.
4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① 중요 요소들은 문서화한다.

- 구체적인 분쟁 사례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한 1차적인 관문은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다.
-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 내용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될 수 없다. 이를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고 하며, 방송 포맷 표절 분쟁과 관련된 다수의 사례들에서 각국의 법원은 ‘방송 포맷이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저작물로 볼 수 없어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사업자로서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높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히 자신의 방송 포맷이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자료가 존재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방송의 기획·제작 단계에서부터 방송 포맷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에 대해서는 기획안, 제안서, 바이

블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 ② FRAPA(포맷인증보호협회)에 자신의 방송 포맷을 등록해둔다.
 - FRAPA는 방송 포맷의 표절 방지,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범의 강화, 방송 포맷 표절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포맷인증보호협회(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로서, 방송 포맷과 관련하여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 FRAPA는 방송 포맷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는 방송 포맷 등록(Format Registry) 서비스가 포함된다. FRAPA에 방송 포맷으로 등록되었음이 해당 방송 포맷이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
 - FRAPA의 방송 포맷 등록 시스템은 FRS(FRAPA Registration System)으로 불리는데, FRAPA 회원의 경우와 비회원의 경우 등록을 위한 수수료 및 관련 조건에 차이가 있다. 2018년 1월 기준 FRS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다.

〈FRAPA 방송 포맷 등록 조건〉

구분	등록 수수료	업데이트	관련 자료	등록 유지 기간	갱신 수수료
회원	75 유로	무료	영상 업로드 무제한	3년	50 유로
비회원	150 유로	불가	영상 업로드 불가	3년	150 유로

- ③ 독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제3자의 표절을 어렵게 만든다.

-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에는 최대한 독창적인 요소들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며, 특유의 디자인을 생성한다. 방송 포맷 분쟁 사례들 중 이와 같은 독창적인 요소가 인정되어 방송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 특히, 침해자들은 디자인과 같은 구체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 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독창적인 요소들이나 디자인이 필수적인 경우 표절이 어렵게 된다.

④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방송 포맷이 외부로 유출되어 표절되는 경우, 방송 포맷이 영업비밀로 취급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평소 직원들로부터 방송 포맷을 영업비밀로 취급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두는 경우, 향후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용이해질 수 있다.
- 영업비밀 서약서의 경우, 여러 가지 서식을 활용할 수 있겠으나 특허청 또한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운영하며 홈페이지에서 영업비밀 서약서를 비롯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각종 표준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사업자로서는 참조할 만하다.

2. 사후적 대응방안

- 사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송 포맷이 표절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권리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하의 조치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서술한 것이지만, 이러한 순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변동되거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다.

〈사후적 대응방안의 개요〉

	대응방안
1	표절 현황을 확인한다.
2	침해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3	언론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4	가능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한다.

① 표절 현황을 확인한다.

- 방송의 어떠한 요소가 표절되었는지 및 그 정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누가 어떤 요소를 표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급적 이를 상세히 분석한다.
- 예를 들어, 제목을 표절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도안이나 디자인이 복제된 경우에는 미술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대사나 문구가 표절된 경우에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은 유사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컨셉이 동일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침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표절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향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표절된 부분이 다음과 같은 유형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유형별 방송 포맷의 요소 및 분석의 개요 〉

유형	내용	비고
1유형	• 새로운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기본 컨셉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2유형	• 대본, 캐릭터, 이야기 구조, 프로그램 외관, 스타일, 비주얼 그래픽, 음향 효과, 조명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으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음
3유형	• 프로그램 외적 요소들(제작 및 섭외 계획, 예산, 편성 스케줄 등) • 컨설팅, 상담 서비스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이때,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FRAPА로부터 유사성에 대한 분석의 자문을 받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RAPА는 방송 포맷 표절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방송이 타 방송을 복제(copy)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FRAPА는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 방식

에 따라 개별적인 장면 별로 신청인이 제출한 두 방송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 및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최종적인 유사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이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FRAPА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FRAPА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침해자와 협의를 진행한다.

-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침해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정한 보상금 지급 등 협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법원이 방송 포맷에 대한 보호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할 때 FRAPА를 통한 중재 절차를 제안해 볼 수도 있다.
- 특히 앞 단계에서 표절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이 드물고, 표절된 부분 또한 1유형 포맷에 불과한 경우에는 향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협의 과정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되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및 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언론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 위와 같은 침해자와의 협의 진행과 함께, 권리자로서는 언론 대응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론 대응은 상대방 사업자를 압박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나친 비난으로 상대방 국가의 여론을 자극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권리자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언론 대응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그 장단점 및 예상되는 효과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PR 컨설팅 회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언론 대응을 결정하는 경우, 공표되는 문언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④ 가능한 법적인 절차를 검토한다.

- 침해자가 보상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중재 절차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명확하여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 법적 대응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을 예로 들면, 주요 법적 대응 절차는 크게 정부기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법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소송상 청구 세 가지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다.

〈 분쟁발생시 법적 절차의 개요 (중국의 사례) 〉

절 차	비 고
정부기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음 •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낮음
가처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침해 방송을 중지할 수 있음 • 단순한 경제적 손해에 불과하여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낮음
소송의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로서는 다양한 측면의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음 •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현재 중국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승소 가능성이 낮음

※ 중국에서의 각 법적 대응 절차에 관한 보다 상세한 요건 및 특징은 별임 자료 참조

- 이러한 세 가지 절차는 서로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순서대로 필요성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신고는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 대한 소송보다 먼저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의 경우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구하는 것이므로 소제기 보다 선행할 필요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정부기관 신고 및 소제기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법적 대응 절차 개요

- 중국에서의 권리 구제 절차도 한국에서의 통상적인 권리 구제 절차와 유사하며, 특기할 만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절차가 이용 가능하며 중국에서의 표절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요건, 특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

1. 행정적 구제 수단: 정부기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

- 권리자는 침해 사실의 개요와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갖추어 중국 정부기관(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 판권국과 지방행정관리기관)에 방송 포맷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정부기관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의 시정명령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법원을 통한 소송에 비해 비교적 비용의 부담이 적고 절차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다만,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

른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중국 광전총국이 방송 포맷에 대한 보호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정부기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신고의 개요〉

관 할	침해행위자, 침해결과 발생지, 침해 결과물 보관지 또는 암류지의 행정부서		
제출자료	신청서	신고인 성명, 주소, 사실관계의 요지, 사유 등 기재	
	권리증명	원고, 작품등기증, 저작권 계약서 등기증,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 계약서 등	
	증거	피침해 작품, 기타 증거	
절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문은 신고 접수 후 15 영업일 내 청구인에게 입안 및 통지 수리 시 최소 2명 이상의 집행원을 지정하여 처리 조사 종결 후 집행원이 조사보고 작성 행정처벌을 결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사전 통지서를 송달 또는 공고 당사자가 변론을 요구할 경우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가 인정될 경우 신고를 받은 국가 판권국 또는 행정당국은 침해 중지를 포함한 아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몰수한 제품은 모두 소각함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 침해 작품 몰수, 침해 작품을 설치한 설비 몰수, 침해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한 도구, 설비, 재료 등을 몰수, 기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행정처벌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됨 침해자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함 		

2. 침해 금지 가처분

- 현재 방영 되고 있는 방송을 긴급히 중지시키거나, 혹은 방영이 예정된 방송이 방영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적으로 방송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며, 방송 포맷 표절의 경우 그 침해 방송을 중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단순한 경제적 손해는 이후 보상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긴급한 필요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처분을 신청할 실효성은 크지 않다.
- 관할 법원에 침해 사실의 개요와 자신의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갖추어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사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긴급한 필요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가처분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제소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

〈 법원에 대한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의 개요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해 금지 가처분을 구함
관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자, 피신청인 주소지 또는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담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피청구인에게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범위 내)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은 즉시 피신청인에게 통보 (최장 5일 이내) 사건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 양 당사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10일 이내에 불복 신청 가능하나, 불복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의 효력이 유지됨 가처분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제소 또는 중재를 신청하여야만 가처분 효력이 유지됨

〈 법원에 대한 침해 금지 청구 소송 개요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써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을 구함
관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해행위자, 침해결과 발생지, 침해 결과물 보관지 또는 암류지의 법원
제소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자가 침해 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침해 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저작권도 보호 기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제소가 가능하나 손해배상액은 제소일로부터 2년간 발생한 것을 기초로 산정함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침해자의 불법적인 소득에 따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음 손해배상액에는 권리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권리자의 손해액 또는 침해자의 소득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이 권리 침해 행위의 정상에 입각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함

3. 소송상의 청구

-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침해 영상의 방영 중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하며, 종국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관할 법원에 입증자료를 포함한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되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제소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4. 기타: 권리자가 주장 가능한 권리

- 위와 같은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권리자는 자신의 주장이 어떤 권리에 근거한 것인지를 각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 중국에서 방송 포맷이 표절된 경우,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주장해 볼 수 있다.

- 저작권 침해 :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한다. 권리자로서는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가능한 다양한 저작물의 형태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 부당경쟁행위 : 방송 포맷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행위는 중국의 반부당경쟁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한다.
- 영업비밀 침해 : 직원 등을 통해 방송 포맷이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방송 포맷에 관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의 반부당경쟁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
- 상표권 침해 : 방송사 또는 제작사, 프로그램의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다.

방송콘텐츠 포맷 표절 대응매뉴얼

발 행 처	방송통신위원회
발 행 인	이효성
발 행 일	2018년 3월
대표전화	02)500-9000
홈페이지	www.kcc.go.kr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2동
편집/인쇄	인성문화 02)2279-7281

